

#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박기재 의원 발의

나. 의안번호 : 제485호

다. 발의일자 : 2019. 3. 22

라. 회부일자 : 2019. 3. 26

### 2. 제 안 사 유

- 2018년 ‘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’을 수립 및 시행함에 따라 시, 자치구 공공청사 및 산하기관의 회의실 및 실내행사에서 1회용 컵 및 접시 사용을 지양하고 있으며, 올해는 민간위탁기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.

이에 따라 공무원 및 서울시민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었으나, 다회용 용기의 관리 부주의로 위생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가. 다회용품 사용 촉진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의4 신설)

#### **4. 참 고 사 항**

가. 관련 법령: 「식품위생법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1회용 컵이나 접시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며, 다회용품 관리 부주위로 대두될 수 있는 위생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안 제4조의4제1항은 서울시, 서울시 설립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「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1)」에 부합하는 것임.

#### 〈1회용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목표〉

구 분	2017년	2020년	2022년
1회용 플라스틱 감축률	2015년 기준	30%	50%
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	48%	60%	70%

- 안 제4조의4제2항은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척·살균을 위한 기구 등을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나 실내행사를 빈번하게 주관하는 부서 등에 한하여 필요시 다회용품 세척·살균 등 위생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조례에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다회용품의 위생적 관리 및 관련 직원의 업무량 경감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1) 자원순환과-15553('18.9.21)